[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2-14호]

2022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위탁사업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계			12명
반곡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등 담당 -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	4명
	보육보조교사 (영아·누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누리)과정 등 보조 -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	2명
	연장전담교사	- 연장보육신청 영유아의 보육 담당 -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	2명
	야간연장교사	- 어린이집 아동 보육 등 담당 -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	1명
	조리원	-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급간식 조리 업무 담당	1명
고운남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돌봄업무 등 - 기타 센터 운영 관리 업무	1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업무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	1명

2 근무 조건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반곡하나어린이집	보육교사	- (채용방식)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 까지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장소) 반곡하나어린이집 - (보수기준) 월급제(호봉에 따라 결정)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어린이집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검사의 음성확인이 될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함
	보조보육교사 (영아, 누리)	- (채용방식)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 까지 - (근무시간) 주5일(①11:30~16:00, ②9:30~14:00), 20시간 근무 - (근무장소) 반곡하나어린이집 - (보수기준) 월급제(월정액 1,025,000원) : 보건복지부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 지급 *「어린이집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검사의 음성확인이 될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함
	연장전담교사	- (채용방식)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 까지 - (근무시간) 주5일(근무시간 15:00~19:30), 20시간 근무 - (근무장소) 반곡하나어린이집 - (보수기준) 월급제(월정액 1,025,000원) : 보건복지부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 지급 *「어린이집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검사의 음성확인이 될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함
	야간연장 보육교사	- (채용방식)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업무평가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1년단위 계약진행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장소) 반곡하나어린이집 - (보수기준) 월급제(호봉에 따라 결정)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어린이집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검사의 음성확인이 될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함
	조리원	- (채용방식)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 까지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장소) 반곡하나어린이집 - (보수기준) 월급제(호봉에 따라 결정) : 보건복지부 조리원 인건비 지급 *「어린이집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검사의 음성확인이 될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함
고운남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 (채용방식)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4년 10월 24일 까지 - (근무시간) 주5일, 20시간 근무 ※센터 운영 상황(①긴급돌봄, ②방학돌봄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장소)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 (보수기준) 월급제(월정액 : 928,500원)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기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 (채용방식) 기간제 -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 근무평가에 따라 1년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남부종합재가센터(보람종합복지센터 內)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 (보수기준) 월급제 :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적용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기준

◦ (기 준 일) 공고일 현재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단, 정년(만60세) 1년 미만인 자는 응시 불가

※ (야간)보육교사, 돌봄교사, 사회복지사는 정년(만60세)까지 근로가능함

※ 연장전담교사, 보육보조교사는 만64세까지 응시가능하며, 60세부터는 1년 단위 근로계약체결함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사유) 우리 원「인사 규정」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기준)

구분	채용분야	응시자격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보육보조교사*	-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연장전담교사*	-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야간연장교사*	-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조리원	- 조리사면허소지자(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3조)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 해당 응시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다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구분	채용분야	응시자격
		-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 경력인정 범위를 준용

*2022년 3월 1일 기준, 만2년이상 어린이집근무가 없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자만 응시가능(면접 시 수료증 제출)

○ **(우대사항)** 각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구 분	대 상	가점	증빙서류
거주지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자	1점	주민등록 초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5점	장애인 증명서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만점의 5~10% *중복시 유리한 내용 한가지만 적용	

* 우대사항 가점은 중복 적용되며 <u>최종 면접전형 백분율 환산점에 합산</u>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을 근거로 적격 여부 판단

○ 합격자 발표: 2022. 2. 10.(목)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채용사이트 개별확인

※ 입사지원서 상 응시자격 적격 여부 미증명되거나, 해당자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서류제출 시 불합격처리됨

□ 인성검사

○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방법)** 2022. 2. 12.(토) 09:00 ~ 13.(일) 21:00, 온라인 검사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인력뱅크 솔루션 활용(SPAT-C 인성검사, 240문항)

※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해당기간 내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 **(평가활용)** 면접시험의 평가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022. 2. 15.(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정

※ 면접시험 예정 장소: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세종시 한누리대로 2107)

※ 응시 및 면접인원에 따라 면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 예정

○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미참여자 면접시험 응시불가)

○ **(평가기준)** 심층면접을 통한 직무이해도, 전문지식, 의사전달력, 태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

분야	보육교사(담임)	그밖의 보육교사, 돌봄교사, 노인맞춤돌봄교사
면접방식	상황면접, 경험면접	경험면접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위원 종합평정(가점 제외)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 **(최종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시험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1순위 : 최종선발시 장애인, 지역인재(세종시), 청년(34세 이하)순으로 선발

2순위 :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가)직원으로서 해당 직무이해도, 나)전문지식과 업무수행 응용능력, 다)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순 으로 고득점자 선발

○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의 사정으로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기　　간)** 2022. 1. 19.(수) ~ 2. 8.(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sj.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제출서류 및 인정기준)**

제출 서류		인정 기준
공통사항(필수)	입사지원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자기소개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자격증 사본	◦ 온라인 파일 업로드(응시자격기준 확인용)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만 응시가능. 단,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만2년이상 어린이집근무가 없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및 수료증을 함께 제출

제출 서류		인정 기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 지원자의 기본응시자격 및 우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자격 증명·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거부 시 응시 불가
해당자에 한함 (파일 업로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모두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경력인정함 ◦ 이전 근무지의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폐업한 근무처에 대해 기재된 사실증명(전국 세무서에서 근무 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 첨부
	경력 및 경험기술서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만 해당함	◦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경력은 반드시 작성
	주민등록초본	◦ 세종시 거주 가점 및 병역사항 확인용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인정, 거주지변동사항 및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채용우대 및 가점관련 증명서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증명 서류의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으로,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6 채용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2. 1. 19.(수)~2. 8.(화)	
지원서 접수	2022. 1. 19.(수)~2. 8.(화) 17:00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2022. 2. 10.(목)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 사이트 공고

구 분	일 정	비 고
인성검사	2022. 2. 12.(토) 09:00 ~ 13.(일) 21:00	온라인 검사
면접시험	2022. 2. 15.(화) *면접참여자 인원에 따라 면접일정 상이함	상세내용 재단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 18.(금)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 사이트 공고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2. 2. 21.(월) ~ 25.(금)	임용등록서류 제출 상세내용 개별 안내
임용예정일	2022. 3. 1.(화) 예정 *분야별 임용예정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지할 예정입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7: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자격기준을 위해 제시해야하는 내용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최종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예정자의 제출한 증빙 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응시자 본인의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반환하며(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접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부터 시험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사장 입구에서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면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면접관이 응시자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한 후 바로 재착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채용 담당자

※ 지원자는 채용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셔서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채용담당자(☎044-850-8163)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결격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공통)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3. 채용신체검사결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각 사업의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집 응시자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부칙(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안내

① 제16조제8호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유아보육법」부칙(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안내

제16조의 개정규정(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함께돌봄센터 응시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